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8.

발 의 자 : 이견태 · 홍기원 · 전재수
양문석 · 이개호 · 조인철
최혁진 · 정준호 · 염태영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,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.

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,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,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,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01조의2 등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1조의2제2항 본문 중 “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”를 “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”로, “구인한”을 “출석하게 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에”를 “제4항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2항 단서에”로 한다.

1.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
2.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
3.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

니한 경우

③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심문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, 제2항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심문하여야 하고,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판사는 검사의 진술 취지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설명함으로써 해당 진술의 증명력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第203條의2 중 “제201조의2제2항 또는”을 “제201조의2제2항 단서 또는”으로 한다.

第214條의2제14항 중 “제201조의2제6항을”을 “제201조의2제7항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1조의2(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) ① (생략)	제201조의2(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<u>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. 다만,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-----출석하게 한-----</u> ----- <u>. 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1.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2.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3.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③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심문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, 제2항의 경우</u>

⑩ 제71조, 제71조의2, 제75조,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, 제85조 제1항·제3항·제4항, 제86조, 제87조제1항,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<u>제2항</u>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, 제48조, 제51조, 제53조,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. 第203條의2(拘束其間에의 算入) 被疑者가 第200條의2·第200條의3·<u>제201조의2제2항</u>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02條 또는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 起算한다. 第214條의2(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) ① ~ ⑬ (생략)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<u>제201조의2제6항</u>을 준용한다.	항까지와 같음) ⑪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2항 단서</u> <u>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第203條의2(拘束其間에의 算入) ----- ---<u>제201조의2제2항 단서</u> 또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第214條의2(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 ⑭ ----- -----<u>제201조의2제7항</u>을-----.
--	--